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 교육 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 운영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도로교통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50,000원
------	-------	----------------

신청인 제출서류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交通安全교육기관카드 1부 2. 부대시설·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3.交通安全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交通安全교육기관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交通安全교육강사의 자격증 등交通安全교육강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交通安全교육기관의 직인(한 번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것을 말합니다) 및交通安全교육기관의 장·운영책임자의 도장의 인영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설립·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交通安全교육기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3.交通安全기관의 장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경우 운영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포함합니다) 4. 설립·운영하는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설립·운영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